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76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조인철 · 주철현 · 이정문
허영 · 어기구 · 정준호
김동아 · 김우영 · 서삼석
김성범 · 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를 “음란·폭력정보,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1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u>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u>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 ----- ----- <u>음란·폭력정보,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생략)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② ----- ----- ----- -----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③ (생략)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	--